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료제공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5년도의 경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8,468명 발생하여 4,818명(51.1%)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1,873여명은 입양(19.9%), 407명은 소년소녀가정(4.3%), 그리고 나머지 2,322명(24.6%)정도만이 가정위탁 되어 지고 있다.

매년 위탁가정과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전환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가정위탁보호와 입양은 다르다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을 때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가정위탁보호는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켜 자녀로 키우는 입양과 달리 호적에 등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인의 자격으로 아이를 돌보게 된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는 일정기간동안 위탁가정 내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위탁아동은 누가 되나?

위탁대상아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미만의 아동(18세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이 된다. 친부모나 보호자가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모가 요청하며 이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준다면 자신의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친부모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아동을 친부모로부터 격리, 적절한 전문가의 치료를 통하여 아동과 친부모는 학대와 방임의 후유증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된다. 이외에도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정세대의 경우 아직 미성숙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보호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이 아동을 책임지고 양육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보살펴 준다.

가정위탁보호, 국가가 지원

위탁가정(부모)은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친가정 복귀를 돕는 부모(가정)를 말한다. 아동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양육경험이 있는 부모, 위탁부모 교육을 이수한 부모, 위탁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부모가 위탁가정(부모) 자격을 갖게 된다.

위탁가정(부모)의 지원은 양육보조금(위탁보호아동 1인당 월 7만원

이상),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전세자금 지원(친인척 위탁가정), 상해보험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가정복지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개별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역할

아동위탁의 필요성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전개하고자 2004년 7월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체계 구축 및 가정위탁 보호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역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도(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위탁가정을 연계하는 등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양육되고 건강한 성장 및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 가정위탁아동 사후관리 

Mini Interview

위탁아동의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한 고민이 최우선

센터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문상담원의 경우 1급 사회복지사 중 입사 후 1년내에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08년부터는 1급 사회복지사 중 100시간의 상담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5명의 전문상담원이 있으며 지역마다 5명 이내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지방이양 된 이후에 기본 인력 5명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4명으로



| 김지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운영되는 곳도 있다.

지방센터와 중앙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중앙센터의 경우 법, 정책, 제도, 지원방법 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가정위탁지원사업을 홍보하고 각 지방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센터의 평가를 위해 2006년에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파트너쉽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동복지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복지관 등 네트워크를 함께 있어 관련 없는 기관이 없고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 없다. 다른 기관과의 연대에 있어 간혹 입장차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위탁아동이 바람직하게 양육 받는, 보호받는 기능이 어느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탁 아동의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한 고민을 최우선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센터와의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워크숍이나 사례연구 보고회 개최를 통해 각 지역의 사례에 대해 나누고 공문을 통한 자료수렴, 제안서 수렴 등을 통해 전국 센터의 의견을 모은다. 또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각 지역 센터 단위로도 공무원들과의 연찬회 등을 통해 위탁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등 지자체와의 연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센터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업 진행단계에 있어 제도적·법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가정위탁기간 동안 위탁아동에 대한 권리에 한계 주, 양육 후 파생되는 전학이나 여권발급 등의 사소한 생활상의 문제에 이르기 까지 위탁부모의 권리를 어디까지 승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 매뉴얼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구분하고 구체화해서 일상생활에서 예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례를 입수하고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배포, 공유하여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